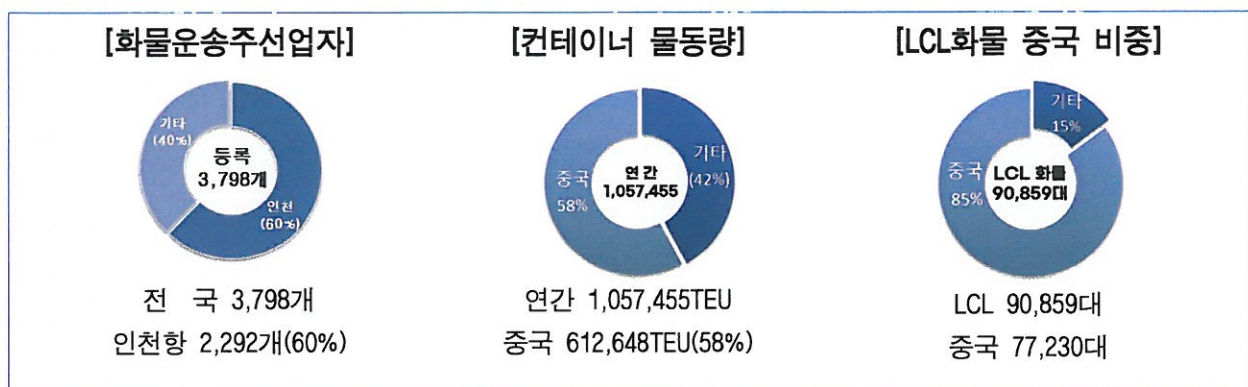


인천항 통관·물류 질서 정상화를 위한 LCL화물 실화주 성실신고 대책 설명회 자료

1 추진 배경

- 인천항은 對중국 교역 및 LCL화물 비중이 높고 포워더·창고 등 영세 물류업체가 많아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
- 명의위장신고 등 고질적 불법행위로 세관 통제기능을 위협함에 따라 통관물류 정상화를 위한 ‘실화주 성실신고 대책’이 필요



특히, 일부 포워더가 국내에서 선하증권(B/L)을 비정상적으로 발행하거나,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수입신고하여 통관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사실 확인

2 실화주 위반사례

- 실화주 허위신고 저가신고
 - (명의위장) 납세의무자를 실화주가 아닌 포워더가 관리하는 업체(가짜사업자)로 일괄하여 수입신고
 - (중간물류업자)「동대문시장 사업업자」등 구매대행업자가 실화주들의 주문을 일괄하여 수입신고

□ 비정상적 국내 B/L발행

- 해외포워더를 대리하는 국내 포워더가 관행적으로 B/L*을 발행하여 화물수취·수입통관 등에 이용

* (상법 제852조) 선하증권은 물품의 수취/선적을 증명하는 유가증권으로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물품을 수취/선적한 운송인이 발행

□ 실화주 확인 시범운영 결과('20.8월~11월, 7회)

총 7차례의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실화주 및 실제가격으로 자발적 수정신고하도록 하고, 관련 포워더가 허위등록 한 정황도 확인

- (①명의위장) 개장검사로 명의위장업체 12社 → 실화주 57社 확인
 - 실화주는 본인명으로 사업자를 등록·운영하면서도 無자료 거래 목적으로 명의위장업체 이용
- (②저가신고) 실제가격 대비 저가신고율 단가별 1/2배~1/26배 (평균 1/10배) 차이
 - 함께 반입된 정상 실화주건은 저가신고의 사례를 찾기 어려웠으나, 명의위장업체 수입통관 건에서는 대부분 실제가격과 큰 차이의 저가신고가 발생
- (③허위등록 포워더) 법률상 등록대표가 아닌 者가 실제대표라며 세관의 화물검사 과정에 입회(명함 교부)하는 등 타인명으로 포워더 거짓 등록한 정황 확인
- (④불법행위 반복) 포워더 기준 총 7차례 화물검사 中, 3차례(3개 포워더)는 과거에도 제3자 명의로 수입신고해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적발

3 실화주 성실신고 대책

추진 목표

- 그 간 세관통제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일삼는 포워더에 대해 실화주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명의위장·저가신고 및 불공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
- 핵심 물류공급망인 포워더가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세관의 통제기능 회복 및 인천항 통관물류 질서를 정상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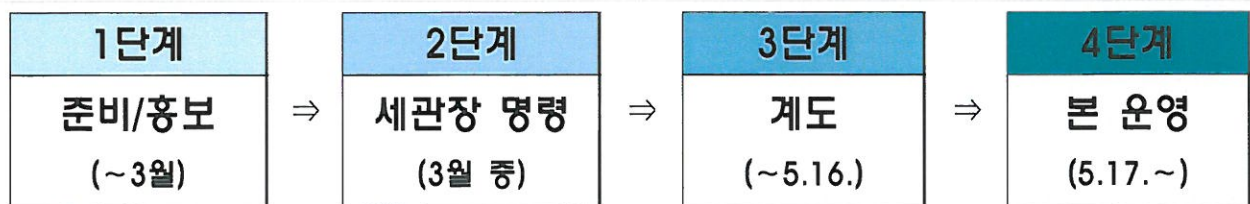
① 수입신고와 연계한 포워더 단위 검사체계 구축

- 공급망 위험도 분석을 통해 고위험 포워더를 선정하고, 해당 포워더가 반입한 화물(컨테이너)를 관리대상화물(즉시검사)로 지정
- ⇒ 수입신고 연계검사를 통해 실화주 적정성 등 통관적법성 확인

② 세관장 명령을 활용하여 성실신고 풍토 조성

- 「관세법」 제263조에 규정된 세관장 명령을 통해 포워더에게 실화주 정보 확인·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, 명령위반 시에는 처벌 근거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
- ⇒ 포워더에게 사전(포괄적)·사후(개별적) 세관장 명령을 하고, 위반 포워더에 대해 경고·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

4 추진 계획



참고 1

관련 법령

[관세법]

제222조(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) ③관세청장(세관장)은 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영업에 관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

제224조(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)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,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

4. 보세운송업자등(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)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
제263조(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) 관세청장(세관장)은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물품·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·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,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·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

제266조(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) ①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수출입업자·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·전산화된 장부, 서류 등 관계 자료 또는 물품을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[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]

제7조(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)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로서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

제10조(행정제재) ①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, 직원,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 명령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수 있음

1.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해당업무 또는 영업에 관한 보고, 서류, 장부 등의 제출 명령을 위반한 때
2. 이 고시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세관장 명령을 위반한 경우
→ 1차 경고, 2차 업무정지 5일, 3차 업무정지 10일, 4차 등록취소(최근 1년간)